

한일 정부의 2015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시켜야 한다.

김 창 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머리말

오늘 심포지엄 안내문의 취지 부분에는 “어떻게 정부간 합의에 혼을 불어넣어 살려갈 것인가”라는 과제에 대해 생각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다. 또한 기조강연자들도 “완성”시키고 “개선”시켜 가자고 주장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매우 유감스럽지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양국 정부의 2015년 12월 28일의 ‘합의’(이하 ‘2015 합의’)는 완성시킬 수도 개선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살려나갈 수 없는 것이다. ‘2015 합의’는 그 근본전제에 있어서 잘못된 ‘합의’이므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물론이고,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폐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II. ‘2015 합의’는 애당초 해결책이 될 수 없다.

1.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핵심으로서의 ‘법적 책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를 강요한 범죄에 대해 일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책임은 범죄에 대한 것이기에 법적 책임이며, 일본이라는 국가가 져야 하는 것이기에 국가책임이다. 일본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실 인정, 사죄, 배상, 진상규명, 위령, 역사교육,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 이것이 지난 4반세기 동안 거듭 확인되어 온 상식이다.

1980년대 말부터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제기한 한국의 여성단체들이, 1990년대 초부터 스스로 나서서 피해자임을 밝힌 할머니들이, 거리에서 강연장에서 법정에서 호소한 것이 바로 그 법적 책임이다. 1994년의 국제법률가위원회 보고서, 1996년의 유인 인권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2000년의 유엔 인권소위 맥두걸 보고서, 2001년의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법정’의 최종 판결문 등이 거듭 확인한 것이 바로 그 국가책임이다.

기조강연자들이 언급한 2014년 6월 제12차 아시아연대회의의 제언도 바로 그 ‘법적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비록 그 제언에서는 ‘법적 책임’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 주요한 처벌 대상이 사라진 상황임을 고려하여 ‘책임자 처벌’이라는 항목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그 일본정부에 대한 요구 속에는 “일본정부 및 군”이 “당시의 여러 국내법·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것,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사죄할 것”, “사죄의 증거로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 “일본정부 보유 자료의 전면 공개”와 “추가적인 자료조사”, “추도사업의 실시”, “의무교육과정의 교과서에 기술하는 것을 포함한 학교교육·사회교육의 실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법적 책임’ 이외의 그 무엇일 수도 없는 것이다.

2. '2015 합의'가 '진전'?

기조강연자들은, 「2015 합의」에서 1)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는 점, 2) 내각총리대신이 사과(おわび)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했다는 점, 3)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10억엔)을 거출하기로 했다는 점을 들어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1) 하지만, 이미 1995년에 출범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이하 '국민기금')이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려 했던 「사과의 편지」에 “우리나라로서는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면서”라고 적혀 있다. 따라서 진전이 아니다. 물론 “도의적”이라는 단어는 빠졌다. 하지만, 한일 외교장관 기자회견 직후에 아베 총리와 키시다 외상이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질문이 ‘도의적 책임인가 법적 책임인가’이니, ‘법적 책임’이 아니라면 ‘도의적 책임’일 수밖에 없다. 「2015 합의」의 ‘책임’ 또한 ‘도의적 책임’일 뿐이며, 따라서 ‘진전’은 없는 것이다.

2) 내각총리대신의 사과와 반성 역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위의 「사과의 편지」는 내각총리대신 명의로 되어 있다. 게다가 「사과의 편지」에는 역대 내각총리대신의 서명이 들어 있으나, 「2015 합의」의 ‘사과’는 ‘대독사과’이다. 무슨 ‘진전’이 있었다는 것인가?

3) 키시다 외상은 기자회견 직후에 10억엔은 “배상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한걸음 더 나아가 지난 3월 17일의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는 “償い金”도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렇다면 도대체 10억엔은 무엇인가? ‘의료지원’을 위해 일본 정부가 ‘국민기금’에 출연한 11억 2천만엔의 돈과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어떠한 책임과도 연결되지 않는 ‘인도적인 지원금’일 뿐이다. 그것을 ‘사회의 징표로서의 배상’ 혹은 ‘배상적 조치’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오독이다.

4) 2011년 한국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2015 합의」를 촉발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15 합의」는 그 결정이 내놓은 숙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 숙제는 “「청구권협정」에 대한 한일간의 해석상의 분쟁을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2015 합의」 이후에도 한일 양국 정부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한다. 이 점에서도 ‘진전’은 없는 것이다.

3. '2015 합의'는 '퇴보'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5 합의」에는 어떠한 ‘진전’도 없다. 반면에 ‘퇴보’는 명확하다. 「2015 합의」에는 「코오노담화」에서 명확하게 인정되었던 ‘강제성’, 「코오노담화」는 물론이고 「사과의 편지」에서도 선언되어 있던 ‘역사교육’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2007년 3월 16일에 제1차 아베내각이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각의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아베내각이 출범한 후, 「코오노담화」의 취지를 살려 대다수의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던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술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아베내각이 미국 등의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술을 삭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2015 합의」는 그 모든 사실들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침묵은 곧 묵인이다. 그런데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고 한다. ‘그래서」 「2015 합의」는 명백한 ‘퇴보’인 것이다.

III. ‘시간이 없다’? ‘현실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다’?

피해자들이 삶의 끝을 눈 앞에 두고 있으니 「2015 합의」를 살려야 하는가? 1990년대 초에 문제가 본격화되었을 때부터 이미 피해자들은 고령이었고 시간이 없었다. 피해자들은 ‘국민기금’의 ‘償い金’을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다. 이후 20년 넘게 참으로 시간이 없었음에도 ‘진정한 해결’을 하라고 호소해왔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애당초 해결책이 될 수 없는 「2015 합의」를 내밀며 시간이 없으니 받으라고 다그치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 무엇보다 그 아프고 힘겨운 오랜 세월을 헤쳐 온 피해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일본의 현실을 생각할 때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최대한이니, “낙제점 수준의 위안부 인식을 지닌 아베 총리로부터” 이만큼이라도 얻어냈으니 「2015 합의」를 살려야 하는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그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분들의 이야기이니 결코 그 무게가 가벼울 수 없다. 하지만, 지난 4반세기의 세월 동안 온 몸을 바쳐 ‘진정한 해결’을 호소해온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절절한 호소에 호응한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 ‘가해자의 형편이 이러니 이거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다그치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 매우 유감스러운 이야기지만, 이걸 아니다.

애당초 「2015 합의」 정도라면 굳이 지금의 시점에서 필요하지도 않다. 한국은 1993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2002년에 기념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일본정부로부터 10억엔의 ‘지원금’을 굳이 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화해·치유재단’이라는 목적 불명의 기구를 만들 필요도 없다. 한국의 법률에 따라 지원과 기념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다.

IV. 역사에 죄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함께 ‘전쟁’에 나서자. - 맺음말에 대신하여

「주최자의 개최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역사전쟁’의 장이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과 일본이, 한국인과 일본인이 한덩어리가 되어 서로 싸우는 ‘전쟁터’가 아니다. “일본인 전체가 ‘부도덕한 인간집단’이라는 식의 공격”을 하는 ‘전쟁터’가 결코 아니다.

그 ‘전쟁’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보편적 여성인권의 심각한 침해인가 아닌가,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가해 국가가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 아닌가를 둘러싼 ‘보편적인 가치’에 관한 싸움이다.

「2015 합의」는 ‘현실’을 고려하여 ‘가치’는 덮자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2015 합의」를 전제로 삼고서 한국과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무엇을 지향하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현실’이다. 결국은 ‘힘’이다라고 가르칠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지식의 체념’, ‘가치의 체념’ 아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종식’이나 ‘봉인’이 아니라, ‘지향’이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이 어떠한 가치를 지향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문제이다. 한일관계의 미래는 그 ‘결단’에 달려있다.

(2016.7.30)